

[별표 2]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(제35조의5제1항 관련)

1. 건설업
2. 광업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
  - 가.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
  - 나.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
  - 다. 보안시스템 서비스업
  - 라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
  - 마. 전시,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
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제29조의2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)
  - 가. 광고업
  - 나.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  - 다.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  - 라. 연구개발업
  - 마. 전문 디자인업
6. 정보통신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.
  - 가.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  - 나. 뉴스 제공업
  - 다.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7. 제조업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산업
  - 가. 기타 산업용 기계·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
  - 나. 보관 및 창고업
  - 다. 육상·수상·항공 운송업
  - 라. 육상·수상·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
  - 마. 화물 취급업
  - 바. 화물운송 중개·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
  - 사. 화물 포장·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
  - 아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